

의안번호	2211301
의 퇴 인	허성무 의원
회 답 일	2025. 9. 19.
추 계 번호	25A3606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미래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미래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및 미래형 선박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억 7,000만원(연평균 3,400만원)으로 추계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미래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안 제5조제1항)	40	—	—	—	—	40	8
미래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설치·운영 (안 제6조)	13	13	13	13	13	65	13
미래형 선박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2조)	13	13	13	13	13	65	13
합계	66	26	26	26	26	170	34

주: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조선업의 발전과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계획을 수립하는 등 자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5조 (미래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미래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기본계획에는 ①미래조선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②미래조선업의 실증시험, 신뢰성 평가, 성능검증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③미래조선업 생태계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미래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6조 (미래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미래조선업 생태계 활성화에 관하여 ①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②제2조제1호1)에 따른 미래형 선박의 범위, ③제2조제6호2) 각 목에 따른 기술의 범위, ④제25조제1항에 따른 미래조선업 클러스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미래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를 둠(제1항) 전략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제2항) 전략회의의 의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②미래조선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됨(제3항)	의무규정
4	안 제7조 (전문인력의 양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조선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①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지원, ②전문인력 고용 창출 지원, ③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미래조선업 관련 기술에 관한 교육 지원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1)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형 선박」이란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 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 나.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소형모돌원자로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6호의 소프트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융합 기술이 적용된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 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의 지능정보기술이 적용된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 마. 항로 개척 등을 위한 쇄빙선(砕氷船) 및 내빙선(耐氷船)
 - 바. 수소, 액화천연가스, 메탄올, 암모니아, 전기,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추진 엔진 또는 화물창, 연료창 등 시스템이 적용된 선박
 - 사. 그 밖에 탄소중립 달성, 에너지효율 및 안전·편의 향상 등에 관한 기술이 적용된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2)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스마트야드」란 선박의 건조·개조 또는 수리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과 경영비·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첨단기술을 적용한 선박의 건조·개조 또는 수리 시설을 말한다.
 - 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능형 로봇을 활용한 자동 물류시스템 구축 관련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 나. 삼차원 스캐너를 활용한 가상 연구시설 조성 관련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 다. 그 밖에 선박의 건조·개조 또는 수리의 자동화, 무인화 등과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5	안 제8조 (미래형 선박 실증센터의 설립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형 선박의 실증화를 위하여 미래형 선박 실증센터를 설립하거나 미래형 선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실증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제1항) 실증센터는 ①미래형 선박 관련 기술의 실증시험·신뢰성 평가·성능검증 등 실증화, ②미래형 선박 관련 기술의 사업화 지원, ③실증화를 완료한 미래형 선박의 국내외 시장 진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제2항) 실증센터는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제3항) 정부는 실증센터의 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제4항) 정부는 실증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음(제5항) 제1항에 따라 실증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실증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음(제6항)	재량규정
6	안 제10조 (미래형 선박의 실증화 추진을 위한 사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형 선박 관련 기술이 적용된 선박 등에 대한 실증시험·신뢰성평가·성능검증 등 실증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①실증화에 필요한 장비·시설 구축 및 운영, ②실증화에 필요한 장비·시설 제공기업에 대한 지원, ③실증화에 소요되는 재정 부담비용 완화 등 기업 참여 촉진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형 선박의 실증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주도의 실증 인프라(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민간과 공동으로 실증사업을 기획·추진할 수 있음(제3항) 테스트베드에는 실험역 시험운항, 운항기록 수집, 성능검증 등을 위한 전용 구역, 항만, 부지 등의 기반 시설을 포함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운영할 수 있음(제4항) 국가는 테스트베드 구축 및 공동실증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 부지 제공, 행정절차 간소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5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7	안 제11조 (시범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조선업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8	안 제12조 (미래형 선박 심의위원회)	제13조³⁾에 따른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미래형 선박 심의위원회를 둠(제1항)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제2항)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①미래형 선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②미래형 선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됨.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제3항)	의무규정

3) 안 제13조(시범운항 또는 실증화를 위한 규제특례 등) ① 미래형 선박을 시범운항 또는 실증화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항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 미래형 선박을 시범운항 또는 실증화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른 선박의 검사
2. 「선박안전법」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선박시설의 기준
3. 「선박안전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4. 「선박직원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⑤ 자율운항선박 관련 산업데이터를 실증센터에 공유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시험운항 또는 실증화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9	안 제14조 (미래조선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	국가는 효율적인 투자를 통한 미래조선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 확보와 조세상·금융상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하며, 미래조선업자들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미래조선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음(제3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①미래형 선박의 개발·건조·개조 또는 수리에 필요한 시험 설비 등의 구입, ②미래형 선박의 실증화를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 ③미래형 선박의 해외시장 진출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제4항) 국가는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래조선업자에게 국유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제5항)	재량규정
10	안 제15조 (우선구매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이 건조한 미래형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래형 선박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내국법인이 건조한 미래형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래형 선박의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그 시책에 따라 해당 미래형 선박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1	안 제16조 (미래형 선박 구입·개조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내국법인인 미래조선업자가 건조한 미래형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미래형 선박의 구입, 개조 및 기자재의 설치와 교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12	안 제17조 (미래형 선박을 위한 조선소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선소가 미래형 선박의 건조·개조 또는 수리를 위한 목적으로 신규 설비를 설치하거나 보수를 하는 경우 그 설치·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13	안 제18조 (미래조선업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조선업 및 미래형 선박 관련 기술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미래조선업자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①미래조선업 관련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파견, 연수 및 교육훈련, ②미래조선업 관련 해외 우수 전문인력의 유치 및 활용, ③미래형 선박 관련 기술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음(제2항) 미래조선업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 정부·기관 및 기업 등과 국내 조선소에서 외국 군함을 건조·개조 또는 수리하는 사업을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14	안 제19조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형 선박 관련 기술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⁴⁾ 에 따라 신기술로 인증을 받은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아 신기술을 사업화한 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여 매출이 발생한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5	안 제20조 (연구시설·장비 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조선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 연구시설·장비를 확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4) 안 제15조의2(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신기술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6	안 제21조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의 설치)	국가는 미래조선업자가 국외에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⁵⁾ 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에 해당하는 선박 등(해양방위산업 물자등)을 수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방산 수출진흥기금을 설치(제1항)	의무규정
	안 제2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①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②한국수출입 은행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등으로 조성	
	안 제23조 (기금의 사용)	기금은 ①해양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에 따라 구매국이 반대급부로 요구하는 대응구매 및 기술이전, ② 「방위 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5호 ⁶⁾ 에 따른 수출산업협력 협상방안으로 수출 업체 지원 사항 반영, ③해양방위산업물자등을 생산하거나 해외진출한 미래조선업자의 애로사항 조사와 그 해결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위하여 사용	
	안 제24조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운용·관리(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방위사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제2항)	재량규정

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위산업물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를 말한다.

가.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나.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

다.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전략물자 중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대상 전략물자

6)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수출산업협력”이란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가 국외에 방산물자등을 수출할 때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하거나, 계약상대자로부터 무기·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입하거나, 계약상대국과 경제협력을 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협력관계를 말한다.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7	안 제25조 (미래조선업 클러스터의 지정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조선업의 진흥을 위하여 미래조선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미래조선업 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음	재량규정
	안 제26조 (미래조선업 클러스터의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클러스터에서 ①클러스터 내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과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②미래조선업 관련 기업의 창업 및 유치 촉진, ③미래형 선박 관련 기술의 실증화를 위한 시설 구축, ④미래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 알선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을 위하여 부지의 조성,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18	안 제27조 (스마트야드 구축등의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업, 연구소, 대학 등에 대하여 ①스마트야드 구축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②스마트야드 구축등과 관련된 신제품·신서비스의 개발 및 출시 등과 관련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9	안 제28조 (초도 납품 실적 확보 지원)	국가는 미래형 선박 및 기자재의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미래조선업자 및 기자재 관련 사업자의 초도(初度) 납품 실적 확보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거나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우선 발주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재량규정
20	안 제29조 (공동개발 지원)	국가는 미래조선업의 생태계 강화를 위하여 기자재 기업을 대상으로 전용 연구개발 과제를 지정·지원하고, 공동실증사업, 성능 검증, 국내외 인증 획득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	재량규정
21	안 제30조 (기초 기자재산업 지원)	국가는 도장, 도금, 주조 및 단조 등 미래형 선박 관련 기자재산업의 기반 강화를 위하여 기술개발, 생산설비, 인력의 양성 및 고용 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재량규정
22	안 제31조 (국산 기자재 사용 촉진 및 공정한 경쟁 지원)	국가는 미래형 선박 관련 기자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산 기자재 사용을 촉진하고, 해외 기자재와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재량규정
23	안 제32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권고·선언적 성격의 책무 규정으로 이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분을 추계하기 곤란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2	안 제5조 (미래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	—
3	안 제6조 (미래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	—
4	안 제7조 (전문인력의 양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미래조선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기술 전환 과정에서의 고용 승계, 직무 전환 및 재교육 등을 지원하는 경우 국가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 다만, 재량지출성 사업의 특성상 현 시점에서 제정 규정의 시행에 따른 기존 사업의 예산 확대 규모와 신규 사업의 예산 편성 규모를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으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선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 수료자 중 취업 인원에 대하여 채용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재정 지원을 위하여 “조선해양미래혁신인재양성센터 사업” 등을 추진 중이며, 관련 사업의 2025년도 예산은 92억 4,000만원, 신규 추진 예정 사업을 포함한 2026년도 예산안은 총 141억 9,600만원임* * 해당 사업명 및 최근 예·결산 내역 등은 p.17의 표를 참고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5	안 제8조 (미래형 선박 실증센터의 설립 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미래형 선박 실증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실증화 사업 및 관련 기술의 사업화 지원, 표준화 연구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국가재정으로 사업비 및 기본경비 등이 지원되어 재정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제5항은 실증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수입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제정 규정의 추가재정소요는 실증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국유재산 무상 임대에 따른 재정수입의 감소를 합산하고, 여기에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차감하여 추계할 수 있음 다만, 현재 실증센터의 설립 규모와 사업 범위, 실증센터에 무상 임대할 국유재산의 항목과 사용·대부 수입 등을 추정할 수 없으며, 해당 기관이 추진할 수익사업의 범위와 기대수입 또한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6	안 제10조 (미래형 선박의 실증화 추진을 위한 사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미래형 선박과 그 기술 등의 실증화를 위하여 참여 기업에 장비·시설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국가 주도의 실증 인프라(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경우 국가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 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는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 금액과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부지·항만 조성 및 필요 시설의 건축 비용(공사비) 등을 합산하여 추계할 수 있으나, 기존 실증화 사업의 예산 확대 규모를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고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예산 부지 및 조성 규모, 필요 시설에 따른 공사비 등을 알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추계액을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참고로,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형 선박의 실증 기반 조성 등을 위해 “친환경선박 전환대응 미세먼지 저감 성능평가기반 구축” 사업 등을 추진 중이며, 관련 사업의 2025년도 예산은 총 64억 4,000만원, 신규 추진 예정사업을 포함한 2026년도 예산안은 총 59억원임* * 해당 사업명 및 최근 예·결산 내역 등은 p.17의 표를 참고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7	안 제11조 (시범사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미래조선업의 수요 창출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경우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규모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할 수 없음
8	안 제12조 (미래형 선박 심의위원회)	○	—
9	안 제14조 (미래조선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	×	미래조선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①조세 감면 등 세제 지원, ②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정책 자금의 우선 보증 및 조건 우대, ③선박 개발·건조 등 비용 지원, ④국유재산 무상 대부·사용 승인 등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재정수입이 감소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기준, 범위 및 재정 투입 규모 등을 알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참고로,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조선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하여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R&D)” 사업 등을 추진 중이며, 관련 사업의 2025년도 예산은 총 1,065억 6,300만원, 신규 추진 예정 사업을 포함한 2026년도 예산안은 총 1,400억 7,200만원임* * 해당 사업명 및 최근 예·결산 내역 등은 p.17의 표를 참고
10	안 제15조 (우선구매 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미래형 선박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민간을 포함하여 미래형 선박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 다만, 향후 개발될 미래형 선박의 종류와 구매 또는 운영 비용, 민간 사업자에 대한 지원 기준 및 지원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어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11	안 제16조 (미래형 선박 구입·개조 등에 대한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미래형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선박의 구입, 개조 및 기자재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경우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 다만, 미래형 선박의 건조 및 개조에 필요한 인건비 및 시설비, 기자재 도입 비용과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기준·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으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2	안 제17조 (미래형 선박을 위한 조선소에 대한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미래형 선박의 건조·개조 또는 수리를 목적으로 신규 설비를 설치하거나 설비를 보수한 조선소에 해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 다만, 지원 대상이 되는 설비의 범위와 해당 설비에 대한 조선소의 도입 수요, 신규 설치·보수 비용 등을 알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를 위한 지원 대상자 및 지원 단가를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음
13	안 제18조 (미래조선업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미래조선업자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인력 간 교류와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는 경우 국가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 다만, 재량지출성 사업의 특성상 현 시점에서 제정안의 시행에 따른 기존 사업의 예산 확대 규모와 신규 사업의 예산 편성 규모를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으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참고로,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조선공학 협력을 위한 인력 교류 프로그램 개발, 미국 인력 대상 현장 설계 교육 등을 지원하고자 “초격차조선산업전문인력 양성”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등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명: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R&D)], 2025년도 예산은 총 20억원, 신규 추진 예정 사업을 포함한 2026년도 예산안은 총 136억 2,900만원임* * 해당사업명 및 최근 예·결산 내역 등은 p.17의 표를 참고
14	안 제19조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기술에 대한 사업화를 지원하는 경우 국가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추가재정소요는 제1항의 사업화 지원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액에서 제2항의 기술료 징수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액을 차감하여 산출할 수 있음 다만, 사업화 지원을 위한 재정사업의 추진 방식, 내용, 지원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기술료 징수 기준 및 대상 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액, 매출액 등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으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할 수 없음
15	안 제20조 (연구시설·장비 지원 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미래조선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에 연구시설 및 장비의 확충을 지원하는 경우 국가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재정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규모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할 수 없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6	안 제21조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의 설치)	×	제정안에 따른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은 해양방위산업 물자등⁷⁾의 수출을 진흥하기 위한 목적이며, 이때 해양방위산업물자등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에 포함되므로 같은 법 제15조⁸⁾에 동일한 내용의 수출 지원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제정안에 따라 군함 등 해양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 진흥을 위한 기금이 별도로 설치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박 부문에 대한 수출 진흥 사업을 별도로 추진함에 따라 관련 사업 규모가 확대되어 국가재정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구체적으로 구매국과의 협상을 위한 국외여비 및 임차료, 국제협력 및 교류를 위한 용역비 등 기본경비성 예산이 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제정안에 따라 추진될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과 추진 방식, 정부의 예산 편성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으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참고로, 방위사업청의 경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하여 “국제방산협력지원” (일반회계, 2637-300)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도 예산은 33억 3,200만원임
	안 제22조 (기금의 조성)		
	안 제23조 (기금의 사용)		

7) “해양방위산업물자등”은 안 제21조에 따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에 해당하는 선박 등을 의미함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위산업물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를 말한다. 가.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나.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 다.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전략물자 중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대상 전략물자
--

8)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수출지원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방산물자등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따라 구매국이 반대급부로 요구하는 대응구매 및 기술이전
2. 「방위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절충교역 또는 수출산업협력 협상방안으로 수출업체 지원 사항 반영
3. 해외진출 방산업체 및 방산물자등 생산업체의 애로사항 조사와 그 해결을 위한 지원
4. 민간통상협력 및 산업협력
5. 교육훈련 및 홍보지원
6. 그 밖에 방위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6	안 제24조 (기금의 운용·관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금 운용·관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등을 지원하게 되므로 국가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비용추계에 필요한 기금 사업의 예산 규모나 여유자금 운용 규모 등을 알 수 없어 필요인력의 수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곤란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17	안 제25조 (미래조선업 클러스터의 지정 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미래조선업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클러스터 내 연구개발 활동, 기반 조성, 실증화 시설 구축 및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는 경우 국가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 다만, 해당 규정에 따라 미래조선업 클러스터로 지정될 산업단지의 수와 규모 등을 알 수 없으며, 재정 지원을 위해 실시될 사업의 범위와 구체적인 내용, 지원 기준 등도 알 수 없으므로 소요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안 제26조 (미래조선업 클러스터의 지원)		참고로, 현재 국내 조선업 집적단지는 부산광역시(녹산국가 등), 울산광역시(울산미포 등), 전라북도(군산국가 등), 전라남도(대불국가 등), 경상남도(거제옥포 등)에 소재함 한편,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 중인 유사한 재정사업으로는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등 전기 공급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용인평택반도체 클러스터전력공급지원”(일반회계, 3171-482) 사업이 있으며, 2025년도 예산은 625억 8,000만원임
18	안 제27조 (스마트야드 구축등의 지원 등)	×	미래조선업 관련 스마트야드 구축을 위하여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으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신제품·신서비스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해당 규정에 따른 기존 사업의 확대 규모 및 신규 사업 추진 규모 등을 알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참고로,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스마트야드 기술을 개발하고 국내 중소 조선산업에 해당 기술을 보급·지원하기 위해 “중소조선스마트생산혁신지원” 사업 등을 실시 중이며, 관련 사업의 2025년도 예산은 총 296억 300만원, 2026년도 예산안은 총 286억원임* * 해당 사업명 및 최근 예결산 내역 등은 p.17의 표를 참고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9	안 제28조 (초도 납품 실적 확보 지원)	×	국가재정으로 미래조선업자 및 기자재 관련 사업자의 초도 납품 실적 확보를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재정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규모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할 수 없음
20	안 제29조 (공동개발 지원)	×	국가재정으로 기자재 기업의 전용 연구개발 과제, 공동실증사업, 성능 검증 및 국내외 인증 획득 등을 지원하는 경우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연구개발 과제 및 공동실증사업 등의 범위와 투입 예산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21	안 제30조 (기초 기자재산업 지원)	×	국가가 미래형 선박 관련 기자재산업의 기반 강화를 위하여 기술개발, 생산설비 및 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지원시책과 국산 기자재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제정규정을 근거로 추진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규모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할 수 없음
22	안 제31조 (국산 기자재 사용 촉진 및 공정한 경쟁 지원)	×	
23	안 제32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보조금 및 위탁사업비 예산 등이 편성되어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비용추계에 필요한 위탁 대상 사업의 내용을 알 수 없어 필요인력의 수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곤란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현재 실시 중인 사업은 “조선해양 미래혁신인재양성센터사업” 등 총 13개 사업(1,538억 4,600만원)이며,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총 14개 사업(2,023억 9,700만원)임
-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해당 사업의 예산이 증액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되어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추진 예정인 사업의 규모와 세부 내용 등을 알 수 없어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추계

[표 2] 조선산업 관련 재정사업 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조문번호(제목)	세부사업-내역사업	2023결산	2024결산	2025예산	2026예산안
안 제7조 (전문인력 양성)	조선해양미래혁신인재양성센터사업 (일반회계, 3171-430)	(8,000)	(8,800)	(9,240)	(11,196)
	- 조선해양미래혁신인재양성센터	-	4,800	5,240	7,196
	- 조선산업현장전문인력양성	8,000	4,000	4,000	4,000
	조선산업 핵심인재디지털양성인프라 구축(신규)	-	-	-	3,000
안 제10조 (미래형 선박의 실증화 촉진 사업)	친환경선박 전환대응 미세먼지저감 성능평가기반 구축(일반회계, 3147-317)	3,000	6,000	4,740	-
	중대형 선박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육상 실증기반조성(일반회계, 3171-374)	3,500	3,150	1,700	500
	수소엔진및기자재육상실증플랫폼구축(신규)	-	-	-	2,200
	AI 선박 기자재 및 첨단부품 실증 지원센터 구축(신규)	-	-	-	3,200
안 제14조 (미래조선업 재정 지원)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R&D) (일반회계, 3551-302)	(42,738)	(65,027)	(97,125)	(134,209)
	- 조선해양산업핵심기술개발	26,508	38,541	66,840	106,855
	-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	12,000	9,120	3,910	-
	- 해양플랜트스마트해체기술개발	1,050	-	-	-
	- 친환경수소연료선박R&D플랫폼구축	3,180	-	-	-
	- 친환경선박주주기핵심기술개발	-	12,866	23,000	21,854
	- 액체수소운반선상용화기반기술개발	-	4,500	3,375	5,500
	IOT기반 함정정비 통합관제 플랫폼 개발 (R&D)(일반회계, 3551-318)	1,248	500	1,000	-
	친환경중소형선박기술역량강화(R&D) (일반회계, 3551-363)	5,298	2,533	2,533	-
	친환경선박용극저온단열시스템실증기반구축 (R&D)(소특회계, 3232-313)	5,817	740	-	-
	안전기반 소형 수소추진선박 기술개발 및 실증(R&D)(일반회계, 3571-335)	2,688	1,295	3,083	3,669
	친환경선박 수리·개조플랫폼 고도화 지원사업(일반회계, 3171-402)	600	2,728	2,822	-
	친환경선박용극저온단열시스템생산제조기반 구축(신규)	-	-	-	2,194
안 제18조 (미래조선업 국제협력·해외 진출 촉진)	한-미조선해양산업기술협력센터(신규)	-	-	-	6,644
	중소조선협정MO 글로벌 경쟁력 강화지원(신규)	-	-	-	4,985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R&D)	-	-	(2,000)	(2,000)
	- 초격차조선산업전문인력양성	-	-	2,000	2,000
안 제27조 (스마트야드 구축)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R&D) (일반회계, 3551-302)	-	(12,198)	(22,040)	(21,853)
	- 선박해양의장설계디지털전환핵심기술개발	-	2,482	5,000	4,285
	- 선박소부재생산지능화혁신기술개발	-	4,216	7,270	6,163
	- 해양모빌리티스마트제안당시스템기술개발	-	5,500	6,480	7,415
	- 조선산업생산협업디지털전환기술개발	-	-	3,290	3,990
	중소조선스마트생산혁신지원 (일반회계, 3171-369)	4,000	4,000	4,000	3,986
	조선해양철의장제조산업디지털전환(IDX) 지원사업(일반회계, 3171-379)	1,235	2,450	2,263	1,744
	조선해양기자재디지털협업플랫폼구축 (일반회계, 3171-397)	400	1,300	1,300	1,017
합계		78,524	101,721	153,846	202,397

주: 괄호 안의 예산액은 제정안과 관련된 내역사업의 예산액만 합산한 금액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계 대상은 ①미래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②미래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설치·운영(안 제6조) 및 ③미래형 선박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2조) 비용으로 함

- 안 제5조에 따른 미래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수립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며, 미래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 및 미래형 선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므로 추계금액은 모두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

□ (안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비용으로는 해당 계획을 수립하는 데 소요되는 연구용역비를 추계하며, 이외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연구용역비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계기관이 조선산업과 관련하여 수행한 연구용역의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 제정안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 동안 시행 첫 해인 2027년에만 연구용역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안 제6조·제12조) 전략회의 및 위원회 설치·운영 비용으로는 소속 위원에게 지급하는 참석수당을 추계하며, 이외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전략회의와 위원회 모두 참석수당 및 안전검토수당 등의 지급 대상이 되는 민간위원의 수는 각각 13명, 회의 횟수는 분기당 1회씩 각각 연 4회로 가정하며, 수당 단가는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9)을 준용하여 25만원으로 가정
 - 전략회의와 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각각 안 제6조제2항¹⁰⁾ 및 제12조제2항¹¹⁾에 따른 최대 정수인 20명으로 가정

- 총 20명 중 안 제6조제3항¹²⁾과 제12조제3항¹³⁾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위원은

9)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 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 내로 편성
·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 회의안전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

10) 안 제6조(미래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② 전략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1) 안 제12조(미래형 선박 심의위원회)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2) 안 제6조(미래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③ 전략회의의 의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의장(위원장)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1명)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인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해양경찰청의 차관급 공무원(총 6명)을 합하여 7명으로 가정하고, 이에 따라 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민간위원은 위원 정수 20명에서 위 7명을 제외한 13명으로 가정

*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¹⁴⁾에 따라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만 위원회 참석비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인 위원 7명은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전략회의 및 위원회 내 당연직 위원에 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는 현재 운영 중인 유사한 성격의 자문기구인 “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의 구성을 고려하여 가정¹⁵⁾

○ 위원회의 위원 수는 결원 없이 유지되고, 회의 개최·참석 횟수 및 수당 단가는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¹⁶⁾과 사업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2. 미래조선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3) 안 제12조(미래형 선박 심의위원회) ③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미래형 선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2. 미래형 선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4)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차. 위원회 참석비

-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자기소관 사무는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까지 포함한다.

15)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5.4.29.)

정부는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과 상용화 촉진을 통한 해운·조선산업의 디지털 전략 수립을 위해 지난 2025년 1월 「자율운항선박법」을 시행하고, 동 법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정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민·관 정책 심의·의결기구인 정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공동위원장(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정부위원 5명(기재부·과기부·행안부·중기부·해경청 차관급), 민간위원(자율운항선박 전문가) 6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

16) 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미래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 기본계획 수립 비용은 유사 사례로서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계기관이 수행한 조선산업 관련 연구용역의 평균 예산을 준용하여 산출하며, 추계기간(2027~2031년) 동안 2027년에만 국가재정으로 4,000만원(연평균 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표 3] 조선산업 관련 연구용역 실시 사례

(단위: 백만원)

연구용역명	소관부처	실시연도	예산
조선산업 시장분석을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2022	45
글로벌 선박기자재기업의 성공요인 및 우리 조선산업에 주는 시사점 분석	산업통상자원부	2023	40
미래형 조선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법안 연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4	40
평균			40

[표 4] 미래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미래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40	—	—	—	—	40	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미래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및 미래형 선박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안 제6조 및 제12조)

- 전략회의 및 위원회 설치·운영 비용으로는 민간위원 대상 회의 수당 지급액을 산출하며, 추계기간(2027~2031년) 동안 전략회의와 위원회 각각 6,500만원(연평균 1,3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 회의 수당은 추계의 전제에서 가정한 바에 따라 민간위원 수에 회의 횟수와 수당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각각 1,3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 민간위원 수(13명) × 회의 횟수(4회) × 수당 단가(25만원) = 연 1,300만원

[표 5] 미래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및 미래형 선박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미래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설치·운영(안 제6조)	13	13	13	13	13	65	13
미래형 선박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2조)	13	13	13	13	13	65	1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추계 금액은 유사한 연구용역 수행 및 위원회 운영 사례를 반영하여 추계한 결과로, 실제 재정 소요는 예산 편성 및 정책 추진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김효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진	02-6788-4654	hjkim1991@assembly.go.kr